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금)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목 차

1.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1
2.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6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13
동의안
4.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5.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동원 〉

1. 검토안건

- 안건명 :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의안번호 : 22- 86)

3. 제출이유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내용

- 1)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7.12.31.(5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
(재계약)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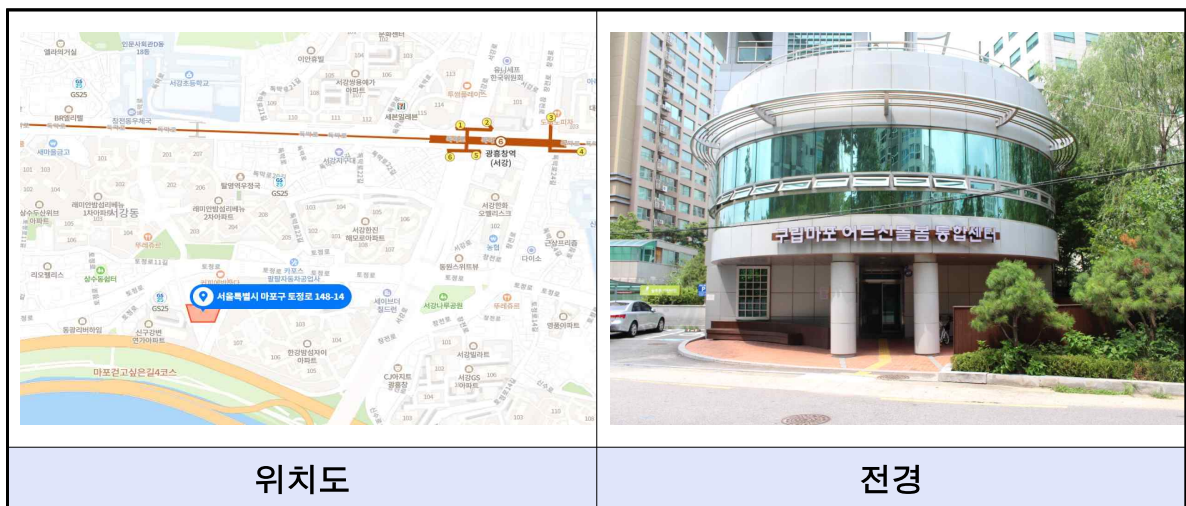
- 1)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2)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3) 재가노인복지사업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 1)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8-14(상수동) (☎ 02-325-3850)
- 2) 시설현황
 -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3층(지상 2,3층 사용)
 - 면적: 750.31㎡(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면적)
 - 층별현황

층별	용도	면적(㎡)	비고
계		1,924.29	
3층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대강강, 휴게실)	300.38	750.31
2층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449.93	
1층	어린이집	477.02	
B1층	주차장, 기계실, 서강동 주민자치회관(별관)	696.96	

3) 위치도 및 전경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2년 예산 기준)

- 1) 소요예산: 2,256,722천원(국비 855,629천원, 시비 873,843천원, 구비 527,250천원)
- 2)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계	2,256,722		
운영비	314,934	·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252,434천원 · 마포어르신돌봄 운영지원비: 62,500천원	시비(80%) 구비(20%)
사업비	1,941,788	· 노인맞춤돌봄(돌봄시비, IOT 포함): 1,677,788천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84,680천원 · 무료급식지원사업: 79,320천원	국비(44%) 시비(32%) 구비(24%)

바. 세부추진일정

- 1)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 : 2022.10.27.
-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선정): 2022. 11.10.
- 3) 재계약체결: 2022.11.16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서울시) 준수하여 민간 위탁 진행

5. 관계법령

-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시설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과의 위탁기간 만료('22.12.31.)가 도래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향후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5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 건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21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동원 〉

1. 검토안건

- 안건명 :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의안번호 : 22- 72)

3. 제출이유

‘공덕 행복주택’ 지역 편의시설 내 신규 설치 예정인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에 대하여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민간위탁기간 : 2023. 2. 1. ~ 2028. 1.31.(5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1) 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2) 주간보호센터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3)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 1) 위치: 마포구 공덕동 370-4 일대, 공덕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내 1층
- 2) 규모: 152.42㎡ (위탁시설 면적)

※ 공덕행복주택 건립 개요

-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2019. 07.~2022. 12.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하/지상)	동 수 (동)	세부내역		
					행복주택	지역편의 시설	근린생활 시설
내 용	164.64	23,217.19	2/12~20	2	20,739.10 (350세대)	2,349.76	128.33

- 부대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현황
 - 부대시설: 게스트하우스(26.19㎡), 주민공동시설(36.55㎡), 어린이집(272.03㎡), 경로당(160.70㎡), 작은도서관(183.51㎡)
 - 지역편의시설: 다목적실(473.85㎡), 피트니스(449.08㎡), 열람실(341석, 502.54㎡), 마포구 주간보호시설(152.42㎡) 1층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2년 예산 기준)

- 1) 소요예산: 243,000천원(구비 100%)
- 2) 산출근거 [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참조]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243,000		
인건비 운영비	193,950	- 기본인건비 168,950천원(종사자 3명) - 운영비 25,000천원	구비
기능보강 사업비	49,050	- PC, 사무용 가구, 집기비품 등	구비

바. 세부추진일정

- 1) '22. 9월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
- 2) '22. 10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
- 3) '22. 1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4) '23. 2월 : 위탁 운영 개시

5. 관계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신축되는 공덕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내 1층에 설치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입소를 통하여 편의제공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본 건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동원 〉

1. 검토안건

- 안건명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의안번호 : 22-73)

3. 제출이유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민간위탁기간 : 2023. 5. 1. ~ 2028. 4. 30.(5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1)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3)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 1) 위치: 마포구 성산로 4길 35
- 2) 시설규모: 건축면적 2,167.82 m^2
(복지관 전용면적 2,122.82 m^2)
- 3)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면적(m^2)	최초개관일	운영인력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4층)	2,010.82	2002.6.20.	38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3층)	112	2003.12.5.	4

4) 층별 현황

층별	면적(m^2)	세부배치
계	2,167.82	
1층	538.91	로비, 직업훈련실, 공동작업장, 사무실, 보장구 수리센터 등
2층	527.97	물리치료, 바우처 치료실, 작업치료, 놀이치료, 부모대기 공간 등
3층	527.97	사무실, 관장실, 주간보호센터,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4층	527.97	카페, 강당, 체력단련실 등
옥탑	44.4	옥상정원

※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18. 5. 1.~2023. 4. 30.(최초위탁일: 2009. 5. 1.)
-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1,915,977천원

2) 산출근거[2022년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반영]

시설명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1,915,977		
마포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720,249	- 인건비 1,543,857천원 - 운영비 146,592천원 - 사업비 29,800천원	시비 80% 구비 20%
마포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인건비 운영비	195,728	- 인건비 181,728천원 - 운영비 14,000천원	시비 재배정

바. 세부추진일정

- 1) '22. 10월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
- 2) '22. 12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
- 3) '23. 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4) '23. 5월 : 위탁 운영 개시

5. 관계법령

- 가.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인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사무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과의 위탁기간이 '23.4.30.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등 관리일체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5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 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동원 〉

1. 검토안건

- 안건명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의안번호 : 22-90)

3. 제출이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1)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2)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3)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센터장	설치 일자	시설 설비 면적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장현아	2017. 8. 1.	상담실: 15.30㎡ 사무실: 40.91㎡ 교육실: 56.30㎡

2) 인력현황

시설명	계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비 고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6	1	1	4	시간선택제 1명

※ 現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00. 1. 1. ~ 2022. 12. 31.(3년.)
- 위탁법인: 사)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총사업비: 193,030천원(시비 87,515천원, 구비 105,515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산 출 내 역
목	세목			
계		193,030	191,332	
		(시) 87,515	(시) 86,666	
		(구) 105,515	(구) 104,666	
민간 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63,030	156,60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45,030천원
		(시) 72,515	(시) 69,30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구) 90,515	(구) 87,300	1,500천원*12월=18,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	34,732	
		(시) 15,000	(시) 17,366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0,000천원
		(구) 15,000	(구) 17,366	

바. 세부추진일정

- 1) '22. 9월 :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성과평가
- 2) '22. 10월 :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 3) '22. 11월 : 협약 체결

5.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시설인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사무는 사)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의 위탁기간이 '22.12.31.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인력 운용 등 관리일체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 건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

-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동원 〉

1. 검토안건

- 안건명 :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9. 5.
- 회부일 : 2022. 9. 13. (의안번호 : 22-83)

3. 제출이유

노년층에 대한 능동적인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민간위탁기간 : 2023. 4. 1. ~ 2028. 3. 31.(5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1) 노인복지관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2) 노인복지관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3)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 1) 위치: 마포구 토정로31길 31
- 2) 시설규모(대지면적/연면적) : 1,263㎡/3,662.05㎡
(복지관 전용면적 2,122.82㎡)
- 3) 시설현황 (용강동 복합청사 중 3,4층을 위탁 운영)

층별	용도	면적(㎡)
5층	계단실, ELEV홀	45.05
4층	경로식당, 강당, 실버카페 등	565.73
3층	용강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	634.69
2층	자치회관, 동대본부	631.42
1층	용강동주민센터, 어린이집	707.32
지층	주차장, 다목적실	1,077.84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소요예산: 648,302천원(전액 구비)
- 2) 산출근거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412,689천원	기본급, 수당,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69,188천원	공공요금, 수용료, 차량비 등
사업비	156,909천원	상담, 재가복지, 사회교육사업 등
시설비	9,516천원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합 계	648,302천원	

마. 세부추진일정

- 1) '22. 9월 :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 2) '22. 10월 ~ 11월 :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 3) '22. 12월 : 협약체결

5. 관계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다. 「노인복지법」 제37조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시설인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용강노인복지관 위탁사무는 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와의 위탁기간이 '23.3.31.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용강노인복지관 시설운영 및 인력 운용 등 관리일체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5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 건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